
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발생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·관리를 위하여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